

불법 주·정차 무인단속(방법)카메라 신규 설치 운영 행정예고

효율적인 불법 주·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 주·정차 무인단속(방법)카메라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『개인정보보호법』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,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5년 12월 5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행정예고내용

불법 주·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운영

2. 관련근거
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제한)
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지침
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
3. 설치장소 : 1개소

연번	설치장소	설치 대수	비고
1	인천 서구 원당동 1017번지(아라역 사거리) 주변	1	일반지역

4. 행정예고기간 : 2025. 12. 5.(금) ~ 2025. 12. 29.(월)(24일간)

5. 공고방법 :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로 방문,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사항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 또는 팩스(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)

다. 제 출 처

- 주소 : (우31512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

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(별관 1층)

- 팩스 : 032-560-2792

라. 제출양식 : 의견제출서(붙임1)

마. 제출기한 : 2025. 12. 29.(월)

바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(☎ 032-560-5940)

※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붙임 1

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 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